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최종 개정일 2024,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명지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학사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 1 절 신입학

- 제2조(입학자격)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3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정원외 모집 인원 산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다.(변경 2014.9.1)
 - 1.재외국민 및 외국인(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 (변경 2014.9.1)
 - 2.특수교육대상자 (변경 2014.9.1)
 - 3. 농어촌지역학생 (변경 2014.9.1)
 - 4.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변경 2014.9.1)
 - 5.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변경 2014.9.1)
 - 6.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변경 2014.9.1)
 - 7.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변경 2014.9.1)
 - 8.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적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변경 2014.9.1.)
 - 9.위탁생 (변경 2014.9.1.)
- 제4조(지원절차) ①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변경 2016.4.1.) ②입학전형료의 감면, 면제, 반납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다.(신설 2016.4.1.)
- 제5조(입학전형) 매 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전형관리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신입학 전형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변경 2021.5.1.)

- 제6조(입학전형의 관리·운영) ①입학전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전형관리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변경 2005.1.11, 2006.1.5, 2009.11.2)
 - ③전형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입학전형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입학전형의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 4.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
 - ④전형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학전형의 공정관리)** ①입학전형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공정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대학입학 부정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입학전형 업무 및 시설의 관리·통제에 관한 사항
 - 3.입학전형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 4.기타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④공정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입학허가) ①입학(편입학 포함)은 입학처장의 상신과 해당 단과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국제교류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변경 2005.1.11, 2006.1.5., 2009.11.2., 2020.7.1., 2021.4.22.)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가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입학원서의 정리·보관) ①입학원서(편입학 포함)는 연도, 모집단위 및 전형 순으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②입학원서와 전형 관련서류의 보존연한은 10년으로 한다.(변경 2020.3.1.)

제 2 절 편입학

- 제10조(편입학 인원·자격) ①일반편입학은 3학년으로 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편입학의 경우 2학년, 3학년, 4학년 에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다.(변경 2019.9.1.)
 - ②일반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4년제 정규 대학교, 산업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각종학교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자(변경 2005.4.1)
 - 2.2년제 및 3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기능대학에서 다기능 기술자 과정을 졸업한 자(2년제 및 3년제 대학 졸업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2년제 및 3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모집인원 산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다.(변경 2016.4.1.)
- ④징계제적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편입학의 지원절차)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편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변경 2016.4.1.)
- 제12조(편입학 전형) ①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편입학 전형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변경 2021.5.1.)
 - ②편입학 전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입학 전형을 준용한다.

제 3 절 재입학

- 제13조(재입학의 허가)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제적당시의 학기 이하에 한하여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생의 학년 및 학기는 제적 전 등록한 학기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제적 전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학년 및 학기는 재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변경 2009.12.1., 2015.11.1.)
- 제14조(재입학의 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 1.징계로 제적된 자
 - 2.증빙서류의 허위 및 위조 제출로 제적된 자
 - 3.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다만,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4.신·편입학한 당해 학기에 제적되어 성적등급을 취득하지 못한 자(변경 2013.9.1.)
- 제15조(재입학의 절차) ①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재입학은 학부(과) 전임교수로 구성된 재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③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의 학업성적 순으로 허가한다.
 - ④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재입학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절 휴학 및 복학

제16조(휴학) ①재학 중 질병, 의무군복무, 모성보호,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변경 2014.3.1)

- ②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 성적인정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변경 2014.3.1., 2021.4.1.)
- 1.일반휴학의 경우 수업일수가 5분의 4미만일 때에는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호 신설 2021.4.1.)
- 2.의무군복무, 모성보호, 창업 휴학의 경우 수업일수가 3분의 2미만일 경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호 신설 2021.4.1.)
- 3.신입학 또는 편입학 당해 학기의 3분의 2시점 이후 군입대를 하는 학생이 성적 불인정 신 청원을 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호 신설 2021.4.1.)
- ④재학 중 일반휴학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군복무, 모성보호, 창업 휴학은 제외하다.(변경 2014.3.1., 2015.3.1., 2022.11.1)

제17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2.의무군복무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3.모성보호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4.창업휴학: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제18조(일반휴학)** ①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4주 이상의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이 본국에서 치료를 원할 경우 국내 1차 의료기관 이상 진단서 또는 본국 의료기관 진단서를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제교류지원팀은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에 휴학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 의료기관 진단서는 학 생의 본국 귀국 후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내용 신설 2019.7.1., 변경 2019.12.1.)
 - ④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년 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항번 호변경 2019.7.1.)
 - ⑤학기 중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항번호 및 내용변경 2019.7.1.)
 - 1.질병, 상해사고
 - 2.인권위원회(산하기관) 및 관련 전문 기관의 권고 및 요청
 - 3.법적조치
 - 4.총장이 허가하는 국내·외 연수 및 회의참석 등의 경우
 - 5.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20.3.1.)
- 제19조(의무군복무휴학) ①의무군복무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 전 의무군복무휴학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4.3.1)
 - ②일반휴학 중에 입대할 경우에는 다시 의무군복무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의무군복무휴학 시작일은 아래 각 호와 같다.(항 신설 2021.4.1.)
 - 1.의무군복무휴학을 신청한 자: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 (호 신설 2021.4.1.)

- 2.군복무 중인 자: 의무군복무휴학원 제출 당일 (호 신설 2021.4.1.)
- 3.군복무 중에 신(편)입한 자: 해당학기 개시일 (호 신설 2021.4.1.)
- 제19조의 2(모성보호휴학) (신설 2014.3.1)①모성보호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를 첨부하여 모성보호휴학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모성보호 휴학기간은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년 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9조의 3(창업휴학) (신설 2014.3.1)①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휴학신청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학사지원팀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 창업휴학 가능여부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년 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0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거 쳐야 한다.
 - ②의무군복무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③휴학기간 중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심사하여 학기 불일치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④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연한 이내 휴학생은 계절수업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다. (변경 2009.12.1., 2016.12.1)

제 5 절 제적 및 자퇴

- 제21조(제적) ①학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지원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한다.
 - ②교육지원처장은 전 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의 명단을 해당 학부(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적일자는 사유발생일로 처리한다.(신설 2019.7.1.)
- 제22조(자퇴) 재학기간 중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필한 자 퇴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절 전 과(부)

- **제23조(시기)** 전과(부)는 매 학년도 초에 실시하며, 교육지원처장은 매년 1월초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2016.3.1.)
- 제24조(자격·신청) ①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다만, 편입학생은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한 우리 대학교

최소졸업학점의 1/4이상을 우리 대학교 과목으로 이수한 자, 전공자유학부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변경 2005.4.1, 2006.4.17, 2009.3.1, 2009.7.1., 2010.3.1., 2016.3.1)

- 2.전출학부(과) 성적이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3.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②전과(부) 지원자는 전과(부)원서를 작성하여 전출·입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사지워팀에 신청한다.
- 제25조(선발) ①전과(부)는 계열별 구분 없이 실시하되 예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09.12.1, 2011.3.1, 2011.12.1., 2012.1.1., 2017.1.1., 2019.3.1)
 - 1.특성화고등졸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학과는 전과(부) 불가
 - 2.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소속된 단과대학 내에서만 전과(부) 가능
 - 3.주야가 학과(부)가 전과(부) 불가
 - 4.학부 내 전공 간 전과 불가(단, ICT융합대학 소속 학부는 가능)(신설 2022.1.1.)
 - ②전과(부) 지원자는 전입학부(과)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선발하되, 필요시 별도의 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변경 2005.4.1)
 - ③전과(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6조(학점인정·교과이수) 전과(부)를 허가받은 자는 전출학부(과)에서 수료한 학점은 인정하되, 전입학부(과)에서 정한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과(부)전 기 취득한 전입학 부(과)의 전공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17.3.1., 2018.3.1)

제 7 절 등록 및 수강신청

- 제27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지정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변경 2018.3.1.)
 - ②등록금을 완납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완납한 것으로 본다.
 - ③이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한 불일치 복학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의 해당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 ④전과(부)생은 전과(부)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이전 학부(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 제28조(등록금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이미 납부한 당해학기 등록금을 반환한다.(변경 2007.12.1, 2009.3.1)
 - 1.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변경 2007.12.1)

- 4.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5.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으로 제적되는 경우(신설 2007.12.1.)
- 제29조(등록금 반환기준) ①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시 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변경 2004.9.21., 2007.3.23., 2011.3.1., 2020.9.1)

②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에 의하여 반환하다.(변경 2004.9.21, 2007.3.23, 2011.3.1)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 일까지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 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30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산정)(조제목변경 2021.6.1.) ①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변경 2004.3.2., 2009.12.1., 2021.6.1. 항번호신설 2021.6.1.)

학점	등록금 산정액
10학점 이상	소속 학부(과) 해당 학년도 등록금 전액
7~9학점	소속 학부(과) 해당 학년도 등록금의 1/2
4~6학점	소속 학부(과) 해당 학년도 등록금의 1/3
1~3학점	소속 학부(과) 해당 학년도 등록금의 1/6

- ②졸업에 필요한 학점보다 수강신청 학점이 많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 금을 산정한다.(신설 2021.6.1.)
- ③학생이 타 학부(과)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전공 교과 목을 개설한 학부(과)의 해당 학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1.6.1.)
- 제31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담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터넷상에서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전임교원의 재학생 자녀가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개강 후 10일 이내에 소속 단과대학장을 거쳐 교육지원처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종 성적입력 마감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생의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교육지원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

- 제3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7학점(공과대학, 건축대학, ICT융합대학, 자연캠퍼스 전공자유학부, 국제학부는 18학점) 이내로 한다. (변경 2009.3.1., 2012.3.1., 2016.3.1., 2019.1.1., 2019.3.1)
 - ②직전학기와 전학년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은 3학점까지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변경 2009.3.1., 2012.3.1., 2019.1.1)
 - ③채플, 봉사학점,교육봉사학점, 학군무관후보생(ROTC)과정 교과목 학점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변경 2006.3.1, 2009.3.1., 2011.3.1., 2018.3.1., 2019.9.1.)
 - ④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학점 중 최대 3학점까지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3.1.)
 - ⑤수강신청과목의 철회(포기) 학점은 이월할 수 없으나 전염병, 국가적 재난 등 특수한 경우 철회 학점 중 최대 3학점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월할 수 있다.(신설 2020.9.1.)

제33조(재수강) ①재수강은 이전에 수강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변경 2005.5.1)

- ②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각 단과대학장이 인정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해당과목은 재수강 횟수 및 취득가능 최고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변경 2005.5.1., 2009.12.1., 2014.6.1., 2021.4.1.)
- ③재수강으로 성적(F등급 포함)을 취득한 경우 먼저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R(Repeated-course)로 표기하고, 성적평점 및 취득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조치된 학사경고 등은 유효하다.(변경 2005.5.1., 2009.3.1., 2014.11.1., 2021.4.1.)
- ④재수강 과목도 수강신청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1개 학기당 최대 2과목, 1과목당 최대 3회까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시 취득가능 최고 성적은 B+로 한다. 다만, 계절수업으로 이수하는 과목은 재수 강 제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1.1., 변경 2017.1.1., 2018.3.1., 2018.11.1., 2019.9.1., 2019.12.1.)
- ⑥재수강을 하였을 경우 교과목 코드가 일치하거나 중복으로 설정된 교과목은 학생의 별도 신청없이 소속 교학팀에서 전산으로 일괄 처리한다.(항 신설 2021.4.1., 변경 2022.9.1.)
- ⑦제2항에 의한 재수강은 반드시 지정된 기일내에 재수강처리신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9.1.)
- 제34조(수강신청의 효력)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포기) ①수강신청 변경기간 외에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은 일체 불허한다.(변경 2003.11.1)
 - ②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은 수강신청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 수강정원에 여석이 있는 과목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변경 2003.11.1)
 - ③수강신청과목의 철회(포기)는 수강신청 철회기간에 한하여 학기당 최대 7학점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03.1.1., 변경 2020.9.1.)
- **제36조(교차수강)** 캠퍼스 간에는 공통교양과 핵심교양을 제외한 전 교과목에 대하여 교차하여 수강할 수 있다.(변경 2009.3.1., 2009.12.1., 2015.3.1.)

제37조(중복수강) 동일한 교과목(중복교과코드)을 2회 이상 수강시 재수강으로 간주하여 제33조 3항을 적용한다.(변경 2021.4.1.)

제 8 절 학번 · 학적부 및 제 증명

- 제38조(학번) ①학번은 신분코드 2단, 입학년도 2단, 입학순번 4단으로 구성한다.
 - ②학번은 변경하지 못한다.
 - ③편입학생의 학번에서 입학년도의 숫자는 편입학생의 당해년도로 소급한다.
- 제39조(학적부 기재사항) ①학적부에는 다음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1.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2.입학 전 학력에 관한 사항
 - 3.입학 후 학적변동 및 성적에 관한 사항
 - 4.졸업 및 학위에 관한 사항
 - 5.상벌, 교육성과 등 기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학사지워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보관·보존) ①학적부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입학년도별, 학부(과)별로,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년도별, 학부(과)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②학적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41조(제 증명서 발급)** ①제 증명서는 학사지원팀에서 발급한다.(2008.3.1)
 - 1.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 2.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이수학점의 85%이상 학점을 취득하고, 최종 학기 등록을 필한 자
 - 3.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4.재적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5.수료증명서 : 해당 학년을 이수하고 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 6.수료예정증명서 :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한 해당 학년별 수료 학점 취득예정자(호신설 2022.1.1.)
 - 7.휴학증명서 : 휴학 중인 자(호번호변경 2022.1.1.)
 - 8.기타 제 증명서(호번호변경 2022.1.1.)
 - ②제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과정

제42조(교과과정 편성) ①우리 대학교 교과과정은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역량중심의 전 공능력, 교양핵심역량과 교과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과

- 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변경 2017.9.1., 2018.3.1)
- ②교과과정 개편은 본부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개편시기, 주제, 범위 등을 결정하되, 개편주기는 학문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매 학기 개편할 수 있으며,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2016.3.1., 2018.3.1., 2023.7.1.)
- 1.본부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개편 방향 및 지침은 학사지원팀에서 각 단과대학에 통보하여 단과대학, 학부(과)별 개편 과제를 제출하도록 한다.(신설 2018.3.1.)
- 2.각 단과대학은 단과대학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된 단과대학 교과과정 개편 내역을 본부 교과과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위해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다만, 교양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위원회를 거쳐 본부 교과과정위원회에 상정한다.(신설 2018.3.1.)
- ③교과과정 개편 및 교과목 폐지에 관한 사항은 학사처리(학사과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변경 2018.3.1.)
- 1.(삭제 2018.3.1.)
- 2.(삭제 2018.3.1.)
- 3.(삭제 2018.3.1.)
- 4.(삭제 2018.3.1.)
- ④ (삭제 2018.3.1.)
- ⑤ (신설 2018.1.1., 삭제 2018.3.1.)
- 제42조의 2(분과위원회) (조신설 2018.3.1.)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2조의 3(회의) (조신설 2018.3.1.)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2조의 4(위원회의사무) (조신설 2018.3.1.) 사무는 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에서 관장한다.
- 제42조의 5(간사) (조신설 2018.3.1.) ①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장이 된다.
- **제43조(교과과정 구성)** ①교과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변경 2015.3.1.)
 - 1.교양과목 : 공통교양과목, 핵심교양과목, 학문기초교양과목, 일반교양과목으로 구분(변경 2006.1.5., 2009.3.1., 2015.3.1)
 - 2.전공과목(변경 2009.3.1)
 - 3.자유선택과목 : 부전공, 교직, 학군무관후보생(ROTC)과정 교과목, 자율선택과목으로 구분(변 경 2008.12.1., 2015.3.1., 2019.9.1.)
 - ②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학과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변경 2018.7.1.)
 - ③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 이수 인정가능 학점은 다음과 같다.(변경신설 2019.1.1)
 - 1.우리대학교내에서 단일전공 또는 다전공 이수시: 이수 인정가능 학점수 제한 없음

- 2.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시: 국내대학 각각의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
- 3.국내대학-외국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시: (국내대학 소속 학생) 국내 및 외국대학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각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 (외국대학 소속 학생) 국내 대학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
- 4.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
- ④전공 및 교양교과과정의 개발 및 환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신설 2018.3.1., 번호변경 2019.1.1.)
- ⑤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수요를 반영한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관한 세부상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7.1.)
- 제44조(교양과목) ①공통교양은 1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목과 학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통교양 언어영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 학점이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학점은 다른 교양학점으로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06.1.5., 2009.3.1., 2013.3.1., 2014.1.1., 2015.3.1., 2018.3.1., 2022.7.1.)
 - 1.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토익 850점 이상 취득자 : 영어(4학점), 영어회화(2학점)(신설 2022.7.1.)
 - 2.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갖은 자 : 영어회화(2학점)(신설 2022.7.1.)
 - ②교과과정 변경에 따라 입학당시의 필수교양과목 중에서 폐지되거나 이수구분이 변경된 교과목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2009.3.1)
 - ③핵심교양은 (별표 2-1)의 각 영역별로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되, 4개 영역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06.1.5., 2009.3.1., 2015.3.1)
 - ④학문기초교양은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교양과목으로, 이수학점은 (별표 1)과 같다.(변경 2005.4.1, 2006.1.5., 2009.3.1., 2015.3.1)
 - ⑤일반교양은 보편적인 주제, 시사, 취미, 여가 등에 관련된 교양과목으로, 이수학점은 (별표 1) 과 같다.(신설 2009.3.1.. 변경 2015.3.1.)
- **제45조(전공과목)** ①전공과목은 해당 학과(전공)별로 지정하며, 학부(과)별 전공이수학점은 (별 표 1)과 같다.(변경 2009.3.1)
 - ②핵심적인 전공과목은 전공필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나, 다만, 편입생과 다전공자는 각 단과대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변경 2009.3.1., 2014.11.1)
 - ③인접학부(과)와 공동으로 공통전공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변경 2009.3.1)
 - ④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2.12.5.)
- **제46조(자유선택과목)** ①학부(과)별 자유선택 이수학점은 (별표 1)과 같으며, 부전공(21학점) 또는 교직과정(22학점)을 이수한 자는 그 취득학점을 자유선택과목의 학점에 포함한다.(변경 2005.4.1., 2009.3.1., 2015.3.1)
 - ②자유선택과목은 따로 개설되지 않으며, 교양과목, 소속 및 타 학부(과) 전공과목, 교직과목,

학군무관후보생(ROTC)과정 교과목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변경 2008.12.1., 2015.3.1., 2019.9.1.)

③봉사학점은 학기당 1학점으로 하되, 최대 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성적은 P(합격)와 N(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47조(교과목 번호) ①교과목 번호는 다음과 같이 개설대학, 학부(과), 이수단계 및 교과목 번호를 붙여서 구분한다.

문자		숫자		
0	0	0	0	0
대학	학부(과)	이수단계	교과목 번호	

②이수구분에 따른 교과목 번호는 다음과 같다.(변경 2015.3.1.)

이수구분	교과목 번호	
1학년 수준의 교양과목(공통교양, 학문기초교양)	100 단위	
1,2학년 수준의 전공과목	200 단위	
2,3학년 수준의 전공과목	300 단위	
3,4학년 수준의 전공과목	400 단위	
4학년 또는 대학원 수준의 전공과목	500 단위	
교직과목	800 단위	

제48조(교과목의 개설·구분) ①교양과목은 방목기초교육대학장이, 전공과목은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가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다만, 총장은 개설 교과목의 강좌수와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변경 2005.8.2)

②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교과목에 대한 개설(주관) 대학과 학부(과)의 표시기호는 (별표 4)와 같으며, 교양과목의 표시기호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계약학과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변경 2018.7.1.)

제48조의2(인증프로그램의 설치·운영) ①공과대학 전 학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에관한내규로 정한다. 다만, 반도체공학과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11.1., 변경 2008.3.1., 2008.11.1., 2022.11.1)

②경영대학 전 학과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08.3.1) ③건축대학 건축학부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11.6.1.)

제48조의3(학·석사 연계과정의 설치·운영) 학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석사 연계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본 조 신설 2017.9.1.]

제48조의4(외국어 강의 운영) 전공, 교양 교과목 중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진행하는 외국어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본 조 신설 2019.9.1.]

제 2 절 강의시간표 작성

- 제49조(강의실 배정) 강의실(실험실습실 포함)은 수용능력과 수강생 수를 고려하여 각 단과대학 장이 배정한다.(변경 2009.12.1)
- 제50조(강좌 개설기준) ①전공과목은 15명 이상으로 개설한다. 다만, 15명 미만이어도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변경 2012.3.1., 2017.1.1)
 - ②교양과목 개설은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0명 미만이어도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변경 2012.3.1., 2017.1.1)
 - ③(변경 2012.3.1.. 삭제 2017.1.1.)
 - ④온라인 교과목 중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30명 이상, 교양과목은 150명 이상으로 개설한다. 다만, 블랜디드 러닝 교과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1.6.1.)
- 제51조(분반기준) 수강인원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분반을 할 수 있다.(변경 2009.3.1)
 - 1.이론과목: 60~70명(교과목 및 여건에 따라 대단위 강의 개설)
 - 2.실험·실습과목 : 30~40명
 - 3.회화과목 : 20~30명
 - 4.교양컴퓨터과목 : 강의실과 강의방법에 따라 조정
 - 5.(삭제 2009.3.1)
 - 6.(삭제 2009.3.1.)
 - 7.(삭제 2009.3.1.)
- 제52조(전임교수의 강의배정) 전임교수의 강의시간은 주당 4일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제53조(속강제한) 3시간 이상의 강의는 분리하여 수업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효과와 교과목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4조(강의시간표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5.8.2)

제 3 절 교·강사

- 제55조(강의시간 배정) ①학부소속 전임교수는 학사과정 1개 학기에 주당 최소 6시간 이상으로 배정하되, 해당학년도 2개 학기동안 대학원과정을 포함하여 합계 18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변경 2015.1.1.)
 - ②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소속 전임교수는 해당 학년도 2개 학기동안 합계 18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변경 2015.1.1.)
 - ③전임교수는 해당 학년도 2개 학기 합계 12학점 이상의 이론과목을 강의하여야 한다. 다만,

- 예술체육대학 및 건축대학 소속교수는 별도로 정한다.(변경 2015.1.1)
- ④석좌교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 ⑤명예교수는 교육지원처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학부과정 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강의에 한하여 주당 3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19.12.1.)
- ⑥ 개원교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07.6.1)
- ⑦겸임교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07.6.1., 2016.12.1)
- ⑧외국인 교·강사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6조(전임교수의 책임시간) ①전임교수의 해당학년도 2개 학기동안 기본 주당 강의시간(이하 "책임시간 "이라한다)의 합계는 시간계정으로 18시간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처리 (학사과정)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변경 2015.1.1)
 - ②보직교수의 연간 강의 책임시간은 별표6 과 같다.(변경 2010.3.1)
 - ③(삭제 2010.3.1)
 - ④(삭제 2010.3.1)
 - ⑤(삭제 2010.3.1.)
- 제57조(전임교수의 초과시간) ①전임교수의 초과시간은 시간계정으로 연 18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변경 2010.3.1., 2017.1.1)
 - ②[별표6] 보직교수의 초과시간 인정범위는 최대 연 6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연 6시간 이내의 야간 강의시수(예술체육대학 스포츠학부 스포츠지도학전공, 특수대학원 전학과에 한함)또는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수행으로 감면 받은 책임시간을 강의한 경우 해당 강의시수는 초과시간으로 별도 인정할 수 있다. (변경 2010.3.1., 2021.3.1., 2021.4.1.)
 - ③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책임시간이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시간만큼 초과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10.3.1., 2017.3.1.)
- **제58조(시간계정)** ①강사료 산정 기준은 시간계정으로 한다.(변경 2018.8.1.)
 - ②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변경 2008.1.1., 2018.8.1)
 - 1.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강좌에 대해서는 10명당 수업시간의 0.1배를 추가한다.(신설 2008.1.1)
 - 2.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강좌에 대해서는 10명당 수업시간의 0.05배를 추가한다.(신설 2008.1.1)
 - 3.300명 이상의 강좌에 대해서는 10명당 0.02배를 추가하되, 수업시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 다.(신설 2008.1.1.)
 - 4.(신설 2017.3.1., 삭제 2018.8.1)
 - ③(삭제 2008.1.1)
 - ④학점과 수업시간수가 동일한 교과목의 시간계정은 수업시간수로 한다.(변경 2018.11.1.)
 - ⑤학점과 수업시간수가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의 시간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18. 11.1.)
 - 1.수업시간수의 0.5배: 주당 수업시간이 학점수의 2배인 과목
 - 2.수업시간수의 0.75배: 영어회화를 제외한 외국어 회화 과목, 실기·실습과목(디자인학부, 예술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건축학부),종합설계관련(공과대학) 교

과목

- 3.수업시간수의 1.0배: '영어회화' 교과목
- 4.수강학생 1인당 1시간: 예술학부의 전공실기 교과목(학생 1인당 매주 최소 1시간 이상 담당 교강사의 개인지도)
- ⑥(변경 2008.3.1., 2016.3.1., 2018.8.1., 삭제 2018.11.1)
- ⑦(변경 2008.1.1, 2008.3.1., 2009.3.1., 2018.8.1., 삭제 2018.11.1)
- ⑧공동강좌는 담당교수 수로 나누어 시간계정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⑨(삭제 2004.3.2.)
- ⑩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 총장은 해당 교과목의 시간계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
- 제59조(과목책임교수) ①동일 교과목이 두 강좌 이상 개설되는 경우에는 과목책임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 ②교양과목은 방목기초교육대학장이, 봉사학점은 사회봉사단장이, 전공과목은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과목책임교수를 지정한다.(변경 2005.8.2, 2006.1.5)
 - ③과목책임교수는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수업진행, 강의내용, 성적평가를 담당 교·강사와 협의·결정한다.
- 제59조의2(외국인 학생 전담교수)[본조신설 2019.9.1.] ①각 학부(과)별 외국인 학생의 수강신청 지도, 상담 등 전반적인 학사관리를 지도하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과목 및 교과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외국인 학생 전담교수를 둘 수 있다.
 - ②외국인 학생 전담교수는 학부(과)별로 외국인 재학생수에 따라 인원수를 달리 할 수 있으며 학기 단위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외국인 학생 전담교수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학기별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기간은 교수업적평가의 봉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60조(교·강사 배정) ①교양과목의 교·강사는 교과목 관련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협조를 얻어 방목기초교육대학장이 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5.8.2)
 - ②전공과목의 교·강사는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소속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배정하고,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동일 교과목의 분반된 강좌는 과목책임교수가 교·강사를 추천한다.
- 제61조(삭제) (변경 2016.12.1., 삭제 2019.9.1.)
- **제62조(전부강의)** 전부강의가 불가피한 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시간표 작성 전에 강의계획서 및 전부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3조(대장) 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5.8.2.)

- 제64조(신규임용·복직교원의 교과목 배정)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전임교수에 대하여는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가 책임강의시간을 배정할 책임을 가진다.(변경 2019.9.1.)
- **제65조(보직해임 후 교과목 배정)** 보직교수가 보직에서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보직이전의 담당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 4 절 수업관리

- 제66조(수업계획서의 작성·배부) ①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변경 2014.2.1.) ②수업계획서는 학기 초 수강학생들에게 배부하거나 인터넷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6조의2(출석관리)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엄정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처리(학사과정)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4.2.1., 2018.1.1.)

제67조(삭제)(조삭제 2022.1.1.)

- 제68조(교수방법 협의)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는 매 학기말에 다음 학기 교과목 담당 교·강 사의 강의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69조(휴·결강) 교·강사는 공무수행, 학회참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결강하여야 한다. (변경 2004.9.1.)
- 제70조(보강) ①보강은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은 학사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수강학생들의 타 교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고, 전자출결 시스템상 보강일 및 보 강 시행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변경 2004.9.1., 2018.3.1.)
 - ②공휴일(명절 연휴 포함), 국가행사, 학교행사 등 예정된 휴강일에 대해서 교육지원처에서는 학기 개시전 보강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수업 개설 단과대학 교학팀을 통하여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수업 교·강사는 전자출결 시스템상 보강일 및 보강 시행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
- 제71조(유고결석)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이유고결석신청서(별표11)와 증빙서류를 갖춰 소속 학부(과·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7.3.1., 2017.11.1)
 - 1.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4주 이내)
 - 2.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4주 이내) (변경 2017.3.1.)
 - 3.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4.교육실습, 야외실습
 - 5.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 6.전국 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7.학생회 임원의 학교 공식행사 참가
- 8.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9.체육부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대회기간, 이동기간 등 대회 출전과 관련된 기간을 포함하되 해당 학기 총수업시수의 1/2까지만 유고결석을 인정함) (변경 2017.9.1.)
- 10.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6.9.1., 2017.3.1)
- 11.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신설 2020.7.1.)
- 12.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변경 2016.9.1.)(호 번호 변경 2020.7.1.)
- **제71조의 2(수업관리현황 점검)** ①수업관리의 엄정성을 위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②정기점검은 매 2년마다 법무감사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례점검과 매학기 학사지원팀 주관으로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실시하는 학기별 점검으로 구분하며, 아래의 사항을 점검한다. (변경 2018.1.1., 2022.4.1.)
 - 1.출석 관리 현황
 - 2. 휴・결강 관리 현황
 - 3.출석 기준 미달자 처리 현황 (호 신설 2018.1.1.)
 - 4.휴·결강에 따른 보강 실시 현황 (호 신설 2018.1.1.)
 - ③수시점검은 학사지원팀 주관으로 별도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학기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점검 점검 항목들의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본 조 신설 2017.9.1., 개정 2018.1.1., 2018.3.1.)
 - ④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사지원팀에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과목 별 교·강사 출강여부 및 출결관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단과대학 에 통보한다. (신설 2021.1.1.)
- 제71조의 3(수업 중단)①학기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수업 중단 사유 발생시 총장은 해당 교·강사의 담당 수업 진행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 다.
 - ②수업 중단 기간 동안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하여 대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조 신설 2018.5.1.)

제 5 절 계절수업 (변경 2016.12.1.)

- 제72조(계절수업 개설) ①학칙에 의하여 계절수업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변경 2016.12.1.)
 - ②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계절수업에 개설할 교과목, 학점, 개설일자, 등록요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변경 2016.12.1.)
- 제73조(개설과목) 개설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 다만, 전공과목은 학부장 또는 학

과주임교수가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제74조(수강신청 기준학점) 계절수업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7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국고재정지원 등의 특정 목적성 사업으로 계절수업이 별도 운영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변경 2016.12.1.. 2017.9.1)

제 6 절 학점취득

- 제75조(학점취득) ①해당 교과목 성적이 D0이상일 경우에 그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군복무 등의 사유로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은 복학년도 해당학년과 동일한 교과과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6조(조 삭제 2006.3.1.)

- 제77조(현장실습·창업활동 및 진로탐색활동학점) ①현장실습수업 및 창업준비활동·창업활동 및 진로탐색활동 과목과 총장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한하여 소정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창업준비활동·창업활동 및 진로탐색활동을 이수한 학생에게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변경 2014.3.1., 2014.11.1., 2019.9.1., 2020.9.1.)(조명변경 2019.9.1.) ②취업연수·창업활동은 장기, 단기로 구분하고 장기는 학기단위로 실시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하고, 단기는 방학 중에 실시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학점인정이가능하며 이의 시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1.1., 변경 2019.9.1.)
 - ③현장실습은 15주 이상은 재학 중 1회, 4주 이상 8주 미만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학점을 인 정한다.(신설 2019.9.1.)
 - ④위 항에도 불구하고 IPP장기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IPP장기현장실습 학점인정제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신설 2017.3.1., 2019.6.1., 항번호변경 2019.9.1.)
- 제78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우리 대학교와 국내·외 대학(원)간 체결된 학점교류에 따라 체결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9조(미래교육원 취득학점 인정) 우리 대학교 부설 미래교육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일부 교과 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명 및 내용 변경 2020.3.1.)
- 제80조(원격수업에 의한 취득학점 인정)(조명변경 2021.6.1.) ①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및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K-MOOC는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세부사항은 미래융합대학 학사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변경 2020.3.1., 2021.6.1.) ②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휴학 생이 원격수업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21.6.1.)

③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의 2(입학전 학습경험 학점인정) (조 신설 2020.7.1.)

미래융합대학 입학생이 입학 전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래융합대학 학사처리에 관한 내규 및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0조의 3(학군사관 후보생 입영훈련 학점인정) (조 신설 2021.1.1.)

학군사관 후보생(ROTC)이 방학 중 입영훈련을 수료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1조(편입학생 학점인정)** ①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년에 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변경 2005.4.1, 2006.4.17., 2009.3.1., 2016.3.1., 2018.4.1)
 - 1.2학년 1학기 편입학생: 우리 대학교 각 학부(과) 별 졸업학점의 1/4범위(5년제는 1/5범위)내에 서 인정 (신설 2018.4.1.)
 - 2.3학년 1학기 편입학생: 우리 대학교 각 학부(과)별 졸업학점의 1/2범위(5년제는 2/5범위)내에서 인정 (신설 2018.4.1.)
 - 3.4학년 1학기 편입학생: 우리 대학교 졸업학점의 3/4범위(5년제는 3/5범위)내에서 인정 (신설 2018.4.1.)
 - ②교양과목중 기독교영역에서 1과목 및 채플(한 학기)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독교영역에서의 1과목은 전적대학에서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외국인학생의 경우 채플은 우리 대학 기독교 영역 교과목 추가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변경 2005.4.1., 2009.3.1., 2017.3.1., 2020.3.1., 2024.1.1.)
 - ③전공과목은 교육지원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 학부(과)에서 심의·결정하여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대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2학년 1학기 편입학생 : 전공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변경 2011.5.1., 2017.4.1., 2018.4.1)
 - 2.3학년 1학기 편입학생 : 전공학점으로 최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학점은 교양 및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삭제 2005.4.1., 신설 2016.3.1., 변경 2018.4.1)
 - 3.4학년 1학기 편입학생: 전공학점으로 최대 5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학점은 교양 및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8.4.1.)
 - ④졸업시 평점평균은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만으로 산정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7.1.)

제 7 절 다전공

제82조(이수범위) ①다전공(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은 모든 학부(과)가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대학 건축학부, 미래융합대학 소속학과는 예외로 한다.(변경 2009.3.1, 2011.3.1, 2011.12.1, 2012.1.1., 2012.3.1., 2019.3.1.)

- ②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내에서 다전공이 가능하다.(신설 2017.4.1., 2019.3.1)
- ③부전공과 복수전공은 학과와 학과, 학과와 학부, 학부와 학부간에 이수할 수 있으며, 학부내의 전공간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2009.3.1., 변경 2017.4.1)
- ④연계전공은 모든 학부(과)에서 이수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계전공 특성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학점 인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경 2017.4.1., 2017.7.1., 2017.9.1)
- ⑤다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변경 2017.4.1.)
- 제83조(신청) ①다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②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사지원 팀에 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3.12.1.)
 - ③예술체육대학의 학부(과)에서는 다전공을 신청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삭제 2013.12.1)
 - ⑤(삭제 2013.12.1.)
- 제83조의 2(선발) 다전공신청서를 접수 받은 학(부)과는 이를 심사하여 선발한 후 선발결과를 소속 단과대학장을 거쳐 교육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방법 및 다전공 학점 인정에 대해서는 각 학부(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2.1.)
- 제83조의 3(포기) ①다전공은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융합전공학부(인문) 및 융합 공학부 입학생은 의무사항으로 이수한 연계전공에 한하여 포기가 불가하다.(변경 2017.7.1.)
 - ②다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전공 소속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사지원팀에 다전공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다전공을 포기할 경우에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참여학과 재학생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 2017.7.1.)
- **제84조(이수·학위수여)** ①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을 이수한 자는 7학기를 수료한 후 학위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③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 8 절 교직과정

- 제85조(교직과목 개설) ①교직과목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교직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으로 한다.
- 제86조(교직과정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학생에 한하여, 매년 3월 중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0.12.1.)

- 제87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신청자에 대하여 2학년까지의 인성과 적성 및 성적순위로 교직과정 승인인원에 해당하는 이수예정자를 선발한다.
- 제88조(수강신청·학점인정) ①교직과목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내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 제89조(교직과정 이수학점) ①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별표 7)교직과목세부이수기준과 학사처리 (학사과정)에 관한 내규에 명시된 교직과정 기본이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09.3.1., 2019.12.1.)
 - ②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표7-2)실기교사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 준에 규정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13.8.1.)
- **제90조(교육실습)** (조명변경 2013.8.1)①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교육실습은 교직과정 세부이수기 준에 따른다.(2013.8.1)
 - ②교육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현장실습신청서와 교육봉사활동신청서를 각각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3.8.1.)
- 제91조(무시험 검정 구비서류 및 합격기준) (조명변경 2013.8.1) ①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 자격무시험검정 신청에 필요한 성적표 1통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및 실기교사 취득 예정자는 (별표7-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해야한다.(변경 2013.8.1)

제 9 절 시험 및 성적

- 제92조(시험) ①시험은 매 학기 수시시험,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변 경 2016.9.1.)
 - ②(변경 2004.9.1., 2007.3.23., 삭제 2016.9.1.)
 - ③(삭제 2007.3.23.)
 - ④시험 진행에 관련된 사항(입실제한 시간, 퇴실 가능여부, 지정 좌석, 지참 허용 도구 종류 등)은 해당 시험의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매 시험마다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7.1.)
- 제93조(추가시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94조(교양과목의 시험감독) ①방목기초교육대학장은 시험감독자를 배정하고, 해당 교·강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2005.8.2)
 - ②시험감독은 교·강사 및 조교로서 1실 2명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제95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결상황, 학습태도 및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가 평가하되, A·B학점을 전체 7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변경 2006.6.1., 2007.6.1., 2017.3.1)
 - 1.성적분포는 A학점 10-30%, B학점 20-40%, C-F학점 30-70%를 원칙으로 한다. (변경 2003.11.1, 2005.8.2., 2007.6.1., 2017.9.1)
 - 2.(삭제 2006.6.1)
 - 3.해당학기 중 5분의 4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인정한다. 다만, 의무 군복무·모성 보호· 창업에 의한 휴학생, 장애학생 및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제출한 신입학 또는 편입학 당해학기 의무군복무 휴학생은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변경 2014.3.1., 2019.3.1., 2019.7.1., 2021.4.1.)
 - ②(삭제 2017.1.1.)
 -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배분비율은 A이상 45% 이내, B이상 누계 9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3.1.)
 - 1.원어(영어,중국어 등)강의
 - 2.교직과정 과목
 - 3.학군무관후보생(ROTC)과정 교과목(변경 2019.9.1.)
 - 4.소규모 강좌(이론 9명 이하, 실험・실기・실습 14명 이하)
 - 5.HONOR과목
 - 6.평생교육실습, 보육실습과목
 -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지원처장은 성적평가 방식 및 등급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7.3.1., 변경 2021.1.1.)
 - 1.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 방식으로는 교육목적 달성 또는 공정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 2.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 운영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 3.교과목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⑤외부 원격수업 수강학생은 비율에 상관없이 별표10에 의거하여 평가한다.(신설 2017.3.1., 2019.3.1)
 - ⑥외국인 학생, 장애학생, 타학교 소속 학점교류 학생은 상대평가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1.1., 변경 2019.7.1., 2019.9.1.)
 - ⑦외국인 학생의 어학 숙련도 및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또 는 시험대체 과제 등의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7.1.)
- 제96조(성적 공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기간 내에 수강학생에게 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05.8.2.)
- 제97조(성적평가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과목 학생들의 성적등급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입력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전에 교육지원처장과 협의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변경 2005.8.2.)
- 제97조의 2(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다음의 항목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5.1.1.)

- 1.수업계획서
- 2.교과목 출석부(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포함) (변경 2017.11.1.)
- 3.시험 문제지 및 상 중하의 점수를 받은 시험 답안지 각 1부
- 4.과제물 상·중·하 수준별 각 1부
- 5.최종 성적 및 산출근거
- 6.교과목의 강의개선(CQI)보고서
- 7.기타 근거 자료 각 1부 (신설 2017.9.1.)
- 제97조의 3(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 ①매 학기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는 학기말에 자신이 강의한 교과목의 포트폴리오를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하며, 대학은 10년간 보관한다.(신설 2015.1.1., 2019.6.1., 2022.1.1.)
 - ②외부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는 학부(과)는 인증기관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1.1., 2017.9.1., 2019.9.1., 2022.1.1.)
- 제98조(성적처리) ①교육지원처장은 각 교과목 담당교수의 이의신청이 완료된 성적에 대해 전 산정보원장에게 전산처리를 의뢰한다.(변경 2005.1.11, 2005.8.2, 2006.1.5)
 - ②교육지원처장은 성적순위자명부를 작성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성적통지표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 전까지 본인에게 우송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한 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명칭을 부여하고, 성적표 및 성적 증명서에 기재한다. 다만, 성적포기나 인정학점 등으로 인하여 상승된 학점 및 평점은 제외한다.(신설 2011.3.1)
 - 1.성적 최우수 등급 : 수강신청학점이 18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16학점), 평균 평점 4.0이상인 자
 - 2.성적 우수 등급 : 수강신청학점이 18학점 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16학점), 평균평점 3.75이상 4.0미만인 자
- 제99조(성적표시) 각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평균성적은 가중평균치법을 사용한 평점으로 표시한다.
- **제100조(성적의 취소)** (조명 변경 2017.11.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 1.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 2.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 또는 해당과목 성적 3.(삭제 2017.11.1.)
 - 4.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 5.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제101조(성적 이의신청) ①매 학기말에 제출되는 성적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열람 이후 공지된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요청하여 정정할 수 있다.

- ②담당교수는 이의신청된 성적을 심사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적분포 비율 범위 내에서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항신설 2003.11.1)
- ③제1항의 기일이 경과하면 성적정정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처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교육지원처장은 이의신청된 성적을 심사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제102조(성적열람) ①성적열람은 배부된 기말성적 통지표를 활용하되, 필요시에는 기말성적이 정리된 후에 열람할 수 있다.
 - ②전반적인 학점취득 상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신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3조(평균성적의 산출) 학업 성적의 평균평점을 산출하는 방법은 가중평균치법에 의하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변경 2021.4.1. 항번호 삭제 2022.9.1. 변경 2022.9.1)

 Σ (단위학점 \times 취득평점)

총 수강신청 학점 수

②(항삭제 2022.9.1.)

제 10 절 학사경고

- 제104조(학사경고)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매 학기말에 학사경고를 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 제105조(특별지도) ①1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에게 통보하고, 소속 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또는 담임교수의 학생 면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변경 2018.3.1.)
 - ②연속하여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변경 2018.3.1.)
 - ③단과대학장, 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담임교수는 학생의 상담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또는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지도하고 해당부서에 명단을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3.1., 변경 2018.3.1)
 - ④ '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또는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신설 2015.3.1., 변경 2018.3.1.)
- 제106조(학사경고의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한 학기에 다시 학사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속 횟수로 처리한다.(변경 2014.3.1.)

제106조의2(학업관리 대상자 관리) (조신설 2018.3.1.) ①학기 평균평점 1.5이상 2.0미만인 자를 해당학기 학업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소속 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또는 담임교수는 해당 학생의학업상태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담임교수는 학생의 필요시 학생에게 '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또는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지도하고 해당부서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료 및 졸업

제107조(수료학점) 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변경 2005.4.1, 2006.4.17, 2009.3.1, 2009.7.1)

1.제1학년 : 최소졸업학점의 1/4 이상(5년제 학부(과)의 경우 1/5이상)

2.제2학년 : 최소졸업학점의 2/4 이상(5년제 학부(과)의 경우 2/5이상)

3.제3학년 : 최소졸업학점의 3/4 이상(5년제 학부(과)의 경우 3/5이상)

4.제4학년 : 최소졸업학점(5년제 학부(과)의 경우 4/5이상)

5.제5학년 : 5년제 학부(과)의 최소졸업학점

- 제108조(졸업학점) ①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7.6.1)
 - 1.졸업학점은 128학점(공과대학은 134학점, 건축대학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은 164학점, 전통 건축전공은 170학점, 공간디자인전공은 164학점, ICT융합대학은 134학점, 계약학과는 120학 점) 이상으로 한다.(변경 2005.4.1, 2006.4.17, 2009.3.1., 2012.3.1., 2014.1.1., 2016.3.1., 2018.7.1., 2019.1.1)
 - 2.전공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학과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변경 2005.4.1., 2018.7.1)
 - 가.단일전공 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전공선택제를 승인받은 학생의 경우 본인 소속학과(부) 전공학점 이외에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 학점도 단일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21.1.1.)
 - 나.복수전공 이수학점은 (별표1-1)과 같다.(목 전문 변경 2017.9.1.)
 - 다.연계전공 이수학점은 (별표1-2)와 같다.
 - 라.부전공 이수학점은 (별표1-3)과 같다.
 - 마.교직 이수학점은 (별표1-4)와 같다.
 - 3.조기졸업은 학칙 제5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3.11.1)
 - 가.전체 성적이 평균평점 4.0 이상(학·석사 연계과정인 자는 평균평점 3.5 이상)이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한 학기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변경 2009.3.1., 2019.9.1.)
 - 나.학사경고 및 학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②(신설 2007.6.1., 삭제 2017.3.1.)
- 제109조(한국어 졸업인증) (조제목 변경 2021.9.1.)①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이학칙 제50조와 이 시행규칙 제108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어 졸업인증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료로 인정한다.(변경

2006.3.1., 2007.6.1., 2021.9.1.)

- ②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9조의 2(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설 2011.5.1., 조명변경 2019.1.1) ①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최대 2개 학기 동안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변경 2019.1.1.)
 - ②학사학위 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19.1.1.)

제 5 장 학생활동

제 1 절 총학생회

- 제110조(총학생회 설치 및 운영)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 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를 두며,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11조(회원자격·권리의무) 회원은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2조(임무·기능) 본 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
 - 2.의료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 3.기타 학생 자치활동
- 제113조(기구·조직) 본 회는 단과대학학생회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14조(선임방법·임기) 본 회의 대표는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임기는 당해 학년도 1 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회장이 휴학, 퇴학 및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본 회의 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5조(피선거권) ①본 회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공고일 현재 6학기 이수중인 재학생으로 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C+(2.5)이상인 재학생(변경 2009.12.1)
 - 2.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자
 - 3.회원의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변경 2009.12.1)
 - ②본 회의 기타 부서 대표에 대하여는 전항을 준용한다.

- 제116조(활동·간행물)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법령에 위배되는 교내광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 2.기타 교육상 이유로 금지할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공개강좌

- 제117조(용어의 정의) "공개강좌"라 함은 정규의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수활동을 말한다.
- 제118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는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부속기관장, 부설교육기관장 및 연구소(센터)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 제119조(개설승인)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강좌개시 1개월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총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목적
 - 2. 명칭(제목)
 - 3.강좌 과목명 및 강사의 성명
 - 4.강좌개설 기간 및 장소
 - 5.수강생의 자격
 - 6.수강생의 선발기준
 - 7.학급 편제 및 수강생 정원
 - 8.강좌 이수의 사정기준
 - 9.수강표
 - 10.기타 필요한 사항
- 제120조(이수증명)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21조(결과보고) 공개강좌를 마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시가제등록생

- 제122조(자격) 시간제등록생은 제2조의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자와 대학재적 중인 자로 한다. 다만, 대학재적 중인 자의 경우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007.3.1.)
- 제123조(선발시기) 선발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 **제124조(선발인원)** (삭제 2014.9.1.)

제125조(지원절차) 우리 대학교에 시간제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선발방법) (삭제 2014.9.1.)

- 제127조(등록) ①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 ②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은 학점당 등록금으로 책정하며, 그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8조(선발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1.제127조를 이행하지 않은 자
 - 2.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 3.전염병, 유전성 기타 질환으로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
- **제129조(취득 기준학점)**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변경 2014.9.1.)

제130조(교육과정) (삭제 2014.9.1.)

- 제131조(타 기관에서의 취득학점 인정)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타 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2조(졸업요건) 시간제등록생이 우리 대학교의 졸업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졸업학점은 140학점 이상이고, 이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하여야 하며, 교양과목 중 기독교영역에서 1과목, 채플(1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05.8.2., 2017.3.1., 2020.3.1.)
 - ②타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대치하여 교양학점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33조(학년배정)** 시간제등록생은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 제134조(학적관리) 시간제등록생의 학적은 별도로 관리한다.
- 제135조(중명서 발급) 시간제등록생에게는 제 증명서 및 학생증을 발급한다.
- 제136조(준용) 시간제등록생에게는 학칙 및 이 시행규칙의 수업, 시험과 성적 등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137조(학칙 준수의무) 시간제등록생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교수회

- 제138조(교수회) ①우리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전체교수회, 학부장·학과(전공)주임교수회 및 단과대학별 교수회로 나눈다.
 - ②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참관자로 교수 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변경 2012.7.1)
 - ③전체교수회 및 학부장·학과(전공)주임교수회는 총장이, 단과대학별 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
 - ④전체교수회와 학부장·학과(전공)주임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⑤대학별 교수회는 총장 또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39조(교수회의 성립)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성립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1.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경상대학 지식정보학부, 예체능대학 산업디자인학부(영상에니메이션전 공) 재적생은 학부(전공) 명칭변경에 의하여 각각 경상대학 경영정보학부, 예체능대학 산업디 자인학부(영상디자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2.2001년 이전 인문대학 인문계열(문헌정보학과, 사학과, 아랍지역학과, 아동학과), 이과대학 생명과학과, 공과대학 전기정보제어공학부, 세라믹화학공학부, 컴퓨터학부, SOC공학부, 기계공학부에 입학한 자는 2005년 8월까지는 종전의 계열(학과) 및 학부(과)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각각 인문대학 인문계열(문헌정보학과, 사학과, 아랍지역학과, 아동학과, 미술사학과), 이과대학 생명과학정보학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계열(전기공학과), 화공/세라믹/환경생물공학계열(화학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환경생물공학과), 컴퓨터공학계열(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건설교통공학계열(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부(기계공학, 기계정보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3.2000년 이전 이과대학 수/물/화계열(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로 입학한 자는 2004년 8월까지는 종전의 계열(학과)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이과대학 이학계열(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4.2000년 이전 이과대학 생활과학부에 입학한 자는 2004년 8월까지는 종전의 학부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예체능대학 의상디자인학과 또는 인문대학 인문계열(아동학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5.2001년 이전 이과대학 생명과학/식품영양학계열(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공과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공과대학 건축학부에 입학한 자는 2005년 8월까지는 종전의 계열(학과) 및 학부로 졸업하고, 그 외 재적생은 이과대학 생명과학/식품영양학계열(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은 이학계열(식품영양학과) 또는 생명과학정보학부를, 공과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부는 전

기전자공학계열(전자공학과) 또는 정보통신공학계열(통신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계열(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을,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공과대학 건축학부 또는 건축대학 건축학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③(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교양과목 및 졸업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교과과정을 적용하되,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다른 규정의 폐지) 이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학사처리에 관한규정, 시간제등록생에관한규정, 부전공제시행규칙, 시간계정산출시행규칙, 학점초과신청자학사업무처리시행규칙,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교과과정심의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시행규칙은 200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5조 제4항의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별로 정한 전공과목 이수는 자연캠퍼스는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인문캠퍼스는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학사과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적의 취소·포기 경과조치)2003학년도 이전까지 취득한 성적은 4학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성적포기원 기간 내에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금반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및 입학금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4조, 제44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08조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교과과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정학점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09년 2월까지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08조 및 제109조는 2007년 2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8조 제6호는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과과정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6조 제4항의 휴학학기 산정은 201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기간부터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8 교직과정 기본이수 교과목 변경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는 2012학년도 재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109조의 2는 2011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편입생 학점인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 편입생까지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3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4항과 별표9학위증서 양식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조는 2013학년도 후기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3조, 제83조의 2, 제83조의 3, 제 108조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다전공,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규칙 시행당시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영어영역 신설 교과목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 2항은 2015학년도 3월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 제3항과 제5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6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재적생은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별표1-3·별표1-4의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 제2항의 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1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2조제4항 및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08조 개정규정의 경우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3조·제44조·별표1·별표1-1·별표1-3·별표 1-4·별표2·별표2-1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기존 재학생은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하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1조의 제1항 및 동항 $1 \cdot 2 \cdot 3$ 호, 제81조 제3항의 $1 \cdot 2 \cdot 3$ 호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기존 재학생은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컴퓨터공학과 수강신청 기준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하되, 제32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 별표 1, 별표 1-3, 별표 1-4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컴퓨터공학과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편입생의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2의 산학협력 연계전공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 제5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재적생은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1조, 제132조는 2020학년도 편입생, 시간제 등록생부터 적용하고 별표2. 별표2-1은 202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2조 제5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6조 3항과 제95조 제1항 3호의 개정 안은 2021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국제학부 단일전공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국제학부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영어 졸업인증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영어 졸업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기존 수료생은 본인이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말 지정된 일자에 졸업을 인정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휴학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3학년도 신 ·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시행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坦경 2005.4.1, 2006.1.5, 2006.4.17, 2006.12.27, 2008.3.1, 2009.3.1., 2012.3.1., 2013.3.1., 2014.1.1., 2015.3.1., 2016.3.1., 2017.1.1., 2017.3.1., 2018.3.1., 2018.7.1., 2019.1.1., 2021.4.1., 2023.3.1.,)

단일전공 이수학점

미크				교양				-7) Ó	최소이스
단과 대학	학부(과)	공통 교양	핵심 교양	학문기초 교양	일반 교양	소계	전공	자유 선택	최소이수 졸업학점
인문	전학과	17	12	12	10	51	63	14	128
사회									
과학	전학과	17	12	12	10	51	63	14	128
경영	전학과	17	12	6	10	45	63	20	128
법과	전학과	17	12	9	10	48	63	17	128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17	12	18	10	57	70	7	134
	정보통신공학과	17	12	15	10	54	70	10	134
미래융합	전학과	17	12	12	10	51	63	14	128
	수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자연	물리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과학	화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식품영양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생명과학정보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전기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전자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화학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신소재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환경에너지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777	컴퓨터공학과	17	12	19	0	48	74	12	134
공과	토목환경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교통공학과	17	12	33	0	62	70	2	134
	기계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산업경영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반도체공학과	17	12	15	10	54	70	10	134
	일반과정(비인증)	17	12	15	10	54	70	10	134
	스포츠학부	17	12	6	10	45	63	20	128
예술	디자인학부	17	12	6	10	45	63	20	128
체육	예술학부	17	12	6	10	45	63	20	128
	바둑학과	17	12	6	10	45	63	20	128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7	12	14	8	51	112	1	164
건축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17	12	14	8	51	118	1	170
	건축학부 공간디자인전공	17	12	14	8	51	112	1	164
(글)	국제학부 로벌비즈니스전공)	17	12	6	10	45	63	20	128

[주1]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TOEIC 850점 이상 취득자의 경우 학칙시행규칙 제44조 적용됨. [주2] 미래융합대학내 계약학과의 단일전공 이수학점은 상기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정함 [별표1-1](변경 2005.4.1, 2006.1.5)(삭제 2006.4.17.) (신설 2017.7.1.,2018.1.1.,변경 2018.3.1., 2021.9.1., 2024.1.1.)

복수전공 이수학점

			ĭ	고양		복수경	선공자			
단과 대학	학부(과)	공 <u>통</u> 교양	핵심 교양	학문 기초 교양	소계	주전공	복수 전공	복수학문 기초교양	자유선택	졸업최소 기준학점
인문	전학과	17	12	12	41	36	36			128
사회과학	전학과	17	12	12	41	36	36			128
경영	전학과	17	12	6	35	45	45			128
법과	전학과	17	12	9	38	36	36			128
ICT융합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과,융합소 프트웨어학부	17	12	18	47	42	42			134
	정보통신공학과	17	12	15	44	42	42			134
미래융합	전학과	17	12	12	41	36	36		졸업최소 기준학점의 잔여학점	128
	수학과	17	12	16	45	36	36			
	물리학과	17	12	16	45	36	36	해당전공 지정학점		
자연 과학	화학과	17	12	16	45	36	36			128
	식품영양학과	17	12	16	45	36	36			
	생명과학정보학과	17	12	16	45	36	36			
공과	일반과정 (비인증)	17	12	15	44	42	42			134
	스포츠학부	17	12	6	35	36	36			
예술	디자인학부	17	12	6	35	36	36			128
체육	예술학부	17	12	6	35	36	36			128
	바둑학과	17	12	6	35	36	36			
	국제학부 비즈니스전공)	17	12	6	35	36	36			128

[주1] 인중제를 운영하는 단과대학은 해당 인중제 관련 지침에 따름

[주2] 건축대학 건축학부 불허(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 내에서만 가능)

[주3] 위의 표는 동일 단과대학내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대상 학점계산표임

[**望班1-2**](坦경 2005.4.1, 2006.1.5, 2006.3.1, 2009.3.1., 2009.7.1., 2011.5.1., 2012.3.1., 2013.9.1., 2013.12.1., 2014.1.1., 2015.3.1., 2016.3.1., 2017.1.1., 2017.3.1., 2017.4.1., 2017.7.1., 2017.9.1., 2018.11.1., 2019.1.1., 2019.7.1., 2019.9.1., 2020.3.1., 2020.9.1., 2021.1.1., 2021.4.1., 2023.6.1., 2023.9.1., 2024.1.1.)

연계전공 이수학점

연계점	전공명	공통교 양	핵심 교양	학문 기초 교양	연계 학문 기초 교양	일반 교양	소속 전공	연계 전공	자유 선택	합계	비고 (주관학과)	
	복지학				18		제1전공	36		소속학부	행정	
	[콘텐츠				9		(주전공)학점	36		소ㅋㅋ I (과)별	사학	
	터사이언스				9		36	36		최소졸업	경제	
Entrepreneu rship	비경영대학				6			45		- 기소 글 급 학점	경영	
rsnip	경영대학				0		45	36		7.0	0 0	
							제1전공			소속학부		
프로센스	비경영대학				6		(주전공)학점	45		(과)별	거선기니	
자동화 경영							36			최소졸업	경영정보	
	경영대학]			0		45	36		학점		
	님베디드 스템공학				30		54	36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전기 전자 기계	
반도체점	장비공학				_		36	36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전기,전자, 산업경영, 환경에너지	
산학	협력				30		54	36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전자 기계 산업경영 정보통신	
스포.	츠ICT		전공(주7	-	-	자율	36	36	자율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스포츠학부 바둑	
모빌리	티설계	7	시정 학주	점	-	, -	36	36	, =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교통 컴퓨터	
사회	혁신				6		36	36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행정,정치 외교,경제, 디지털미디어,아 동,청소년지도	
공공인	재양성				6		36	36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법학,국문, 영문,사학	
법조역	인양성				6		36	36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법학,철학, 영문	
도시경점	관디자인				0		90(건축,공간) 96(전통건축)	22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건축,공간 전통건축	
프롭테크	비즈니스				0		36	36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부동산, 미래융합경영	

연계전공명	공통교 양	핵심 교양	학문 기초 교양	연계 학문 기초 교양	일반 교양	소속 전공	연계 전공	자유 선택	합계	비고 (주관학과)
반도체계측				0	- 자율	36	36			물리, 반도체
반도체기계설계				30		54	36		소속학부 (과)별	기계, 반도체
반도체데이터마이닝				0		36	36			산업경영, 반도체
반도체인프라	제1	전공(주2	전공)	0		36	36	-1 O		전기, 반도체
반도체소프트웨어	7	시정 학격	점	0		36	36	자율	최소졸업 학점	컴퓨터, 반도체
반도체소재				0	0	36	36			신소재, 반도채
제약바이오			0		36	36			식품영양, 화학, 생명과학정보	
인공지능·ICT융합				9		36	36			정보통신, 데이터테크놀 리지, 전자

- [주1] 「일반과정(비인증)」이수자의 연계학문기초교양 이수학점은 「단일전공 이수학점 일반과정(비인증)」에 따른다.
- [주2]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주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합이 단일전공시 소속 학부(과) 의 최소 전공 졸업 이수학점수 이상이 되도록 이수하여야 한다.
- [주3] 경영대학 소속 학생이 연계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주전공)을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주4] 해당 연계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제1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일치할 경우 중복 인정 학점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주5] 반도체장비공학 연계전공은 2022-2학기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신청하여 이수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1-3]**(변경 2005.4.1, 2006.1.5, 2006.4.17, 2009.3.1., 2012.3.1., 2013.3.1., 2014.1.1., 2015.3.1., 2016.3.1., 2017.3.1., 2018.1.1., 2018.3.1., 2019.1.1., 2021.9.1., 2023.3.1.)

부전공 이수학점

다고	71.11(.1)			교양				., ,=	자유	최소이수
단과 대학	학부(과)	공통 교양	핵심 교양	학문기초 교양	일반 교양	소계	전공	부전공	자유 선택	졸업학점
인문	전학과	17	12	12	10	51	63	21		135
사회 과학	전학과	17	12	12	10	51	63	21		135
경영	전학과	17	12	6	10	45	63	21	0	129
법과	전학과	17	12	9	10	48	63	21		132
ICT융합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과,융합소프 트웨어학부	17	12	18	10	57	70	21		148
	정보통신공학과	17	12	15	10	54	70	21		145
	수학과	17	12	16	10	55	63	21		139
1	물리학과	17	12	16	10	55	63	21		139
자연 과학	화학과	17	12	16	10	55	63	21		139
1 44 1	식품영양학과	17	12	16	10	55	63	21		139
	생명과학정보학과	17	12	16	10	55	63	21		139
	전기공학과	17	12	30	0	59	70	21		150
	전자공학과	17	12	30	0	59	70	21		150
	정보통신공학과	17	12	32	0	61	70	21		152
	화학공학과	17	12	30	0	59	70	21		150
	신소재공학과	17	12	30	0	59	70	21		150
	환경에너지공학과	17	12	30	0	59	70	21		150
공과	컴퓨터공학과	17	12	19	6	54	74	21		149
	토목환경공학과	17	12	30	0	59	70	21		150
	교통공학과	17	12	33	0	62	70	21		153
	기계공학과	17	12	30	0	59	70	21		150
	산업경영공학과	17	12	30	0	59	70	21		150
	반도체공학과	17	12	15	10	54	70	21		145
	일반과정(비인증)	17	12	15	10	54	70	21		145
	스포츠학부	17	12	6	10	45	63	21	0	129
예술	디자인학부	17	12	6	10	45	63	21	0	129
체육	예술학부	17	12	6	10	45	63	21	0	129
	바둑학과	17	12	6	10	45	63	21	0	129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7	12	14	10	53	112	21	_	186
건축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17	12	14	10	53	118	21		192
	건축학부 공간디자인전공	17	12	14	10	53	112	21		186
(글로	국제학부 벌비즈니스전공)	17	12	6	10	45	63	21		129

[주]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TOEIC 850점 이상 취득자의 경우 학칙시행규칙 제44조 적용됨.

[**별표1-4]**(변경 2005.4.1, 2006.1.5, 2006.4.17, 2009.3.1., 2012.3.1., 2013.3.1., 2014.1.1., 2015.3.1., 2017.3.1., 2018.1.1., 2018.3.1., 2019.1.1)

교직 이수학점

				교 양					최소이수
대학	학부(과)	공통 교양	핵심 교양	학문 기초 교양	일반 교양	소계	전공	교직	최소이수 졸업학점
인문	국문,영문,중문,일문 아랍지역,사학 문헌정보	17	12	12	8	49	63	22	134
사회 과학	행정학과, 아동학과	17	12	12	8	49	63	22	134
경영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17	12	6	8	43	63	22	128
법과	법학과	17	12	9	8	46	63	22	131
	수학과	17	12	16	8	53	63	22	138
자연 과학	물리학과	17	12	16	8	53	63	22	138
	식품영양학과	17	12	16	8	53	63	22	138
	전기공학과	17	12	30	0	59	70	22	151
	전자공학과	17	12	30	0	59	70	22	151
	화학공학과	17	12	30	0	59	70	22	151
공과	컴퓨터공학과	17	12	19	6	54	74	22	150
	토목환경공학과	17	12	30	0	59	70	22	151
	기계공학과	17	12	30	0	59	70	22	151
	일반과정(비인증)	17	12	15	8	52	70	22	144
	스포츠학부	17	12	6	8	43	63	22	128
예술 체육	디자인학부	17	12	6	8	43	63	22	128
. 11 37	예술학부 (영화전공, 뮤지컬공연 전공)	17	12	6	8	43	63	22	128

[주]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TOEIC 850점 이상 취득자의 경우 학칙시행규칙 제44조 적용됨.

[**增班2]**(변경 2005.4.1, 2006.1.5., 2009.3.1., 2013.3.1., 2013.6.1., 2014.1.1., 2017.3.1., 2018.3.1., 2020.3.1., 2021.9.1., 2023.1.1., 2024.1.1.)

공통교양

영 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1) 기독교	채플	0.5×4	4회 필수 이수(0.5학점X4학기=2학점) "외국인학생"은 채플 이수 대신 기독교 영역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추가 이수로 대체 가능
	성서와 인간이해 현대사회와 기독교윤리 종교와 과학 기독교와 문화	2 2 2 2	2개 교과목 선택
(2) 사고와 표현	글쓰기 발표와토의	3 3	1개 교과목 선택
	영어1 영어2 영어3 영어4	2 2 2 2	영어1, 영어2 또는 영어3, 영어4 이수
(3) 언어	영어회화1 영어회화2 영어회화3 영어회화4	1 1 1	영어회화1, 영어회화2 또는 영어회화3, 영어회화4 이수
(9) 1104	한국어1 한국어2 한국어3 한국어4	2 2 2 2 1 1 1	한국어1, 한국어2 또는 한국어3, 한국어4 이수 외국인학생 전용
	한국어연습1 한국어연습2 한국어연습3 한국어연습4		한국어연습1, 한국어연습2, 또는 한국어연습3, 한국어연습4 이수 외국인학생 전용
(4)진로와 디지털 리터러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진로선택 디지털리터러시의 이해	2 2	1개 교과목 선택
의무	이수 학점	17	전체 학부(과) 학생 공통 적용

- [주1]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TOEIC 850점 이상 취득자의 경우 학칙시행규칙 제44조 적용됨
- [주2] "외국인학생"의 정의는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름
- [주3] "디지틸리터러시의 이해" 과목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
- [주4] 기독교 영역의 "외국인학생"의 채플 대체 이수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재적생부터 적용함

[**별표2-1]**(신설 2009.3.1., 2015.3.1., 2016.3.1., 2017.3.1., 2018.3.1., 2019.5.1., 2020.3.1., 2022.6.1., 2023.1.1., 2024.1.1.)

핵심교양

영역	교과목명	학점	선택과목 수	비고
역사와 철학	철학과 인간 한국근현대사의 이해 역사와 문명 4차산업혁명을위한비판적사고 디지털콘텐츠로 만나는 한국의 문화 유산	3 3 3 3 3	택1	
	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현대사	3		외국인학생 전용
사회와 공동체	세계화와 사회변화 민주주의와 현대사회 여성·소수자·공동체 현대사회와 심리학 직무수행과 전략적 의사소통 창업입문 디지털리터러시와 미래사회	3333333	택1	
	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사회의 이해	3		외국인학생 전용
문화와 예술	글로벌문화 고전으로 읽는 인문학 예술과 창조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술 문화 리터러시와 창의적 스토리텔링 디지털문화의 이해	333333	택1	
	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문화	3		외국인학생 전용
과학기술과 정보	우주·생명·마음 환경과 인간 SW프로그래밍입문 인공지능의 세계 4차 산업혁명의 이해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3 3 3 3 3 3	택1	
	외국인학생을 위한 컴퓨터 활용	3		외국인학생 전용
	· 계			

- [주1] "SW프로그래밍입문" 교과목은 교과목 수강생이 공과대학, ICT융합대학 전학부(과)의 소속인 경우 자유선택으로 인정됨
- [주2] "외국인학생"의 정의는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름
- [주3]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창업입문"교과목은 사회와 공동체 영역으로 인정되고, 종전 학생은 과학기술과 정보 영역으로 인정됨

[별표2-2] (신설 2011.3.1, 2012.3.1., 삭제 2015.11.1)

[별표2-3] (신설 2011.3.1., 2012.3.1., 삭제 2015.3.1.)

[별표3] (변경 2005.4.1, 삭제 2006.1.5)

[별표4](변경 2005.4.1, 2006.12.27, 2009.3.1, 2010.3.1, 2011.3.1., 2012.3.1., 2014.1.1., 2016.3.1., 2017.1.1., 2018.1.1., 2018.3.1., 2022.6.1., 2024.1.1.)

교과목 개설학부(과) 기호표

대 학	학부(과)	전 공	표시부호	비고
인 문	인문대학 공통전공 (국어국문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아시아문화학과) 인문대학 공통전공 (국어국문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인문대학 공통전공 (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국어국문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한국어학과 글로벌하시아문화학과 영어당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모예창작학과		국 한 아 문한아문문문학정립사학창	
사회과학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북한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제외한디동지복 미아청사	
경 영	공통전공(경영,경영정보,국제통상) 경영대학 공통전공(경영,국제통상) 경영대학 공통전공(경영,경영정보) 경영대학 공통전공(경영정보,국제통상)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부동산학과		과상보상영상정동 경경보경통경부	
법 과	법학과 법무정책학과		법학 법무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공통전공 응용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디콘 융합 응소 데테	
미래융합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사부동무 법법 심 미 경 세	

대 학	학부(과)	전 공	표시부호	비고
자연과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부	공통전공 생명과학전공 생명정보학전공	수 물 화 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공 과	공과대학 공통전공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반도체공학과		공전전정화소환통공계업도 가 간 통공재경환통공계업도	
예술체육	디자인학부 스포츠학부 바둑학과 예술학부 (피아노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공통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과본디자인전공 공통전공 체육학전공 스포츠산업전공 스포츠지도학전공 공통전공 과 아노전공 성악전공	다시산용패 체육산지 둑 악아악 3	
	예술학부 (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작곡전공 공통전공 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작곡 영유 영화 뮤지	
건 축	건축학부	공통전공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전공	건축 건학 전건 공간	
기록정보 연계전공	기록정보	기록정보연계전공	기록	
_	국제학부		국제	

교양과목 표시기호

구 분	교양영역	표시기호	비고
공통교양	공통교양	교필	
핵심교양	핵심교양	교선	
	기독교의이해와삶	균기	
	인문과학	기인 균인	
	문화와예술	기문 균문	
	사회과학	기사 균사	
olul – ok	자연과학	기자 균과	
일반교양	공학	기공	
	건강과생활	기건 균여	
	외국어	기외 균외	
	컴퓨터	기컴 균컴	
	특별주제명사초대강좌	균명	
교 직		교직	

[**별표 6]**(변경 2004.3.1, 2004.3.2, 2005.5.1, 2006.1.5, 2007.7.1, 2008.3.1, 2010.1.1, 2010.3.1., 2012.3.1., 2013.10.1., 2017.3.1., 2017.10.1., 2019.4.1., 2021.4.22., 2022.4.1.)

보직교수의 연간 강의 책임시간

보직명	연간 강의 책임시간	비고
부총장	0	
대학원장	6	
단과대학장	6	
실·처장	6	
대학원 교학처장	6	
산학협력단장	6	
사회봉사단장	6	
대학혁신추진단장	6	
전문대학원장	12	
특수대학원장	12	
학장보	12	
부(실)처장	12	
도서관장	12	
대학교육혁신원장	12	
대학교육혁신원 부원장	12	
교육개발센터장	12	
교육인증성과관리센터장	12	
이러닝-무크센터장	12	
박물관장	12	
전산정보원장	12	
사회교육원장	12	
체육부장	12	
학생상담센터장	12	
명지미디어센터장	12	
국제교류처장	6	
대외협력·홍보위원회 위원장	6	
대외협력·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2	
생활관장	12	
명지기독학술원장	12	
사회교육원교학부장	12	
보건의료센터장	6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세 부 이 수 기 준	
구 분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필 수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와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선택 (마이크로티칭)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필수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와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선택 (마이크로티칭)	* 14학점 (7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 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 없음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이내 포함가능)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이내 포함가능)	* 2학점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과교육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전공과목의 교과 육영역으로 이동]	[전공과목의 교과교육영역으로 이동]	* 4학점 -교과 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합 계	총 22 학점	총 22 학점	총 20 학점

[별표 7-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신설 2009.3.1., 변경 2013.8.1., 2015.11.1., 2016.5.1., 2019.1.1., 2021.6.1., 2022.1.1.)

가. 교직과정 이수자

	입학자 및 計) ===================================			
전 경교사 (2급)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은 [별표 8] 참조 ** 50 학점 이상 -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 지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50 학점 이상 -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은 [별표 8] 참조 ** 조 ** 50 학점 이상 - 지본이수과목 14학 (5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은 [별표 8] 참조 ** 조 ** 50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 (5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은 [별표 8] 참조 ** 조 ** 50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 (5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은 [별표 8] 참조 ** 50 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 교교육 4학점(2과목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 교교육 4학점(2과목 - 교교육 - 교	점 이상			
과 목	점 이상 점			
참조 ○ 2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				
교직과목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				
교직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	- 교육실급 2약점 이상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			
┃ 성적기주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이상 성적 각각 80점 이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교직 적성 및 인성	· ·			
적격판정 2회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산업체현장실습이수확인서 ○ 산업체현장실습이수확인서 ○ 산업체현장실습이 (Told Tyld Pale 1) (Told Tyld Pale 1) (Told Tyld Pale 1)	– .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공업계 표시표 제공업계 표시과목 제공업계 표시과목 제공업계 표시	() () () () () () () () () () () () () (
(영양교사에 한함) (영양교사에 한함) (영양교사에 한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계스 시스			
기타 기	/생물 결합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 교원자격 취득 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마약·대마·향정신				
중독 또는 미성년자 및 중독 또는 미성년자 및 중독 또는 미성년자				
성인에 대한 성범죄 이력) 성인에 대한 성범죄 이력) 성인에 대한 성범죄				
미해당자 미해당자 미해당자	1 7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 시행(단, 2017년 2월 졸업자는 1회 실시)

- ※ 성인지 교육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하나,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은 졸업 전 1회 이상 이수
- ※ 중독 여부 및 성범죄 이력 여부 관련된 사항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부터 적용

나. 실기교사

		세 부 이 수 기 준			
구 분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키고리묘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 기본이수과목(6학점) 이상포함	- 기본이수과목(6학점) 이상포함	- 기본이수과목(6학점) 이상포함		
그지키모	○ 4학점	○ 4학점	○ 4학점		
교직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성적기준	○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78색기판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이상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또는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범죄 이력) 미해당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또는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범죄 이력) 미해당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또는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범죄 이력) 미해당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 시행(단, 2017년 2월 졸업자는 1회 실시)

- ※ 성인지 교육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하나,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은 졸업 전 1회 이상 이수
- ※ 중독 여부 및 성범죄 이력 여부 관련된 사항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부터 적용

실기교사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세 부 이 수 기 준
구 분	2008학년도 입학자이후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교직이론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전공	기본이수과목 6학점이상 전공실기1 전공실기3 전공실기5
합 계	교직 4학점 전공 기본이수과목 6학점이상

[**별표 8]**(변경2006.12.27, 2007.3.1, 2010.12.1, 2011.1.1., 2011.3.1., 2013.3.1., 2015.11.1., 2016.5.1., 2016.12.1., 2017.9.1., 2018.1.1., 2018.11.1., 2019.1.1., 4제 2019.12.1.)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000

OOOO년 OO월 OO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전 공 ○○○학,○○학사

○○○학 , ○○학사

○○○학(○○○인증), ○○학사

부전공 ○○○학

○○○년 ○월 ○일

- ○○대학장 ○○박사 ○
- ○○대학장 ○○박사 ○ ○

위 증명에 의하여 이 학위증서를 수여함.

○○○ 년 ○월 ○일

명지대학교 총 장 ○○박사 ○ ○

학위등록번호 : 명지대○○(학)○○○

[별표 10] 성적 평점 백분율 환산점수표 (신설 2017.3.1.)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산 점수	평점	환 산 점수
4.5	100	4.05	94.9	3.62	89.9	3.18	84.9	2.74	79.9	2.3	74.9	1.87	69.9	1.43	64.9
4.49	99.9	4.04	94.7	3.61	89.8	3.17	84.8	2.73	79.8	2.29	74.7	1.86	69.8	1.42	64.8
4.48	99.8	4.03	94.6	3.6	89.7	3.16	84.7	2.72	79.7	2.28	74.6	1.85	69.7	1.41	64.7
4.47	99.7	4.02	94.5	3.59	89.6	3.15	84.6	2.71	79.5	2.27	74.5	1.84	69.6	1.4	64.6
4.46	99.5	4.01	94.4	3.58	89.5	3.14	84.5	2.7	79.4	2.26	74.4	1.83	69.5	1.39	64.5
4.45	99.4	4.	94.3	3.57	89.4	3.13	84.3	2.69	79.3	2.25	74.3	1.82	69.4	1.38	64.3
4.44	99.3	3.99	94.2	3.56	89.3	3.12	84.2	2.68	79.2	2.24	74.2	1.81	69.3	1.37	64.2
4.43	99.2	3.98	94.1	3.55	89.1	3.11	84.1	2.67	79.1	2.23	74.1	1.8	69.1	1.36	64.1
4.42	99.1	3.97	93.9	3.54	89	3.1	84	2.66	79	2.22	73.9	1.79	69	1.35	64
4.41	99	3.96	93.8	3.53	88.9	3.09	83.9	2.65	78.9	2.21	73.8	1.78	68.9	1.34	63.9
4.4	98.9	3.95	93.7	3.52	88.8	3.08	83.8	2.64	78.7	2.2	73.7	1.77	68.8	1.33	63.8
4.39	98.7	3.94	93.6	3.51	88.7	3.07	83.7	2.63	78.6	2.19	73.6	1.76	68.7	1.32	63.7
4.38	98.6	3.93	93.5	3.5	88.6	3.06	83.5	2.62	78.5	2.18	73.5	1.75	68.6	1.31	63.5
4.37	98.5	3.92	93.4	3.49	88.5	3.05	83.4	2.61	78.4	2.17	73.4	1.74	68.5	1.3	63.4
4.36	98.4	3.91	93.3	3.48	88.3	3.04	83.3	2.6	78.3	2.16	73.3	1.73	68.3	1.29	63.3
4.35	98.3	3.9	93.1	3.47	88.2	3.03	83.2	2.59	78.2	2.15	73.1	1.72	68.2	1.28	63.2
4.34	98.2	3.89	93	3.46	88.1	3.02	83.1	2.58	78.1	2.14	73	1.71	68.1	1.27	63.1
4.33	98.1	3.88	92.9	3.45	88	3.01	83	2.57	77.9	2.13	72.9	1.7	68	1.26	63
4.32	97.9	3.87	92.8	3.44	87.9	3	82.9	2.56	77.8	2.12	72.8	1.69	67.9	1.25	62.9
4.31	97.8	3.86	92.7	3.43	87.8	2.99	82.7	2.55	77.7	2.11	72.7	1.68	67.8	1.24	62.7
4.3	97.7	3.85	92.6	3.42	87.7	2.98	82.6	2.54	77.6	2.1	72.6	1.67	67.7	1.23	62.6
4.29	97.6	3.84	92.5	3.41	87.5	2.97	82.5	2.53	77.5	2.09	72.5	1.66	67.5	1.22	62.5
4.28	97.5	3.83	92.3	3.4	87.4	2.96	82.4	2.52	77.4	2.08	72.3	1.65	67.4	1.21	62.4
4.27	97.4	3.82	92.2	3.39	87.3	2.95	82.3	2.51	77.3	2.07	72.2	1.64	67.3	1.2	62.3
4.26	97.3	3.81	92.1	3.38	87.2	2.94	82.2	2.5	77.1	2.06	72.1	1.63	67.2	1.19	62.2
4.25	97.1	3.8	92	3.37	87.1	2.93	82.1	2.49	77	2.05	72.1	1.62	67.1	1.18	62.1
4.24	97	3.79	91.9	3.36	87	2.92	81.9	2.48	76.9	2.04	71.9	1.61	67	1.17	61.9
4.23	96.9	3.78	91.8	3.35	86.9	2.91	81.8	2.47	76.8	2.03	71.8	1.6	66.9	1.16	61.8
4.22	96.8	3.77	91.7	3.34	86.7	2.9	81.7	2.46	76.7	2.03	71.7	1.59	66.7	1.15	61.7
4.21	96.7	3.76	91.5	3.33	86.6	2.89	÷	2.45	76.6	2.02	71.7	1.58	66.6	1.13	····
4.21 4.2	96.6	3.75	91.3	3.32	86.5	2.88	81.6 81.5		76.5	ł	71.3	1.57	 	1.14	61.6
	÷			·····	·		·	2.44		2	·	·····	66.5	·	61.5
4.19	96.5	3.74	91.3	3.31	86.4	2.87	81.4	2.43	76.3	1.99	71.3	1.56	66.4	1.12	61.4
4.18	96.3	3.73	91.2	3.3	86.3	2.86	81.3	2.42	76.2	1.98	71.2	1.55	66.3	1.11	61.3
4.17	96.2	3.72	91.1	3.29	86.2	2.85	81.1	2.41	76.1	1.97	71.1	1.54	66.2	1.1	61.1
4.16	96.1	3.71	91	3.28	86.1	2.84	81	2.4	76 75.0	1.96	71	1.53	66.1	1.09	61
4.15	96	3.7	90.9	3.27	85.9	2.83	80.9	2.39	75.9	1.95	70.9	1.52	65.9	1.08	60.9
4.14	95.9	3.69	90.7	3.26	85.8	2.82	80.8	2.38	75.8	1.94	70.7	1.51	65.8	1.07	60.8
4.13	95.8	3.68	90.6	3.25	85.7	2.81	80.7	2.37	75.7	1.93	70.6	1.5	65.7	1.06	60.7
4.12	95.7	3.67	90.5	3.24	85.6	2.8	80.6	2.36	75.5	1.92	70.5	1.49	65.6	1.05	60.6
4.11	95.5	3.66	90.4	3.23	85.5	2.79	80.5	2.35	75.4	1.91	70.4	1.48	65.5	1.04	60.5
4.1	95.4	3.65	90.3	3.22	85.4	2.78	80.3	2.34	75.3	1.9	70.3	1.47	65.4	1.03	60.3
4.09	95.3	3.64	90.2	3.21	85.3	2.77	80.2	2.33	75.2	1.89	70.2	1.46	65.3	1.02	60.2
4.08	95.2	3.63	90.1	3.2	85.1	2.76	80.1	2.32	75.1	1.88	70.1	1.45	65.1	1.01	60.1
4.07	95.1		90	3.19	85	2.75	80	2.31	75	ļ	70	1.44	65	1	60
4.06	95														

[별표 11] 유고결석 신청서 (신설 2017.11.1., 변경 2020.7.1.)

유고결석 신청서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학 년	학 번		성	명	

□ 유고 결석 대상 교과목 및 일시

교과	록 정보		유고결석 기간				
되 F H	기기비중	담당교수명	시작일	종료일	비고		
과목명	강좌번호	日の五十名	월/일/시간	월/일/시간			
			/ / :	/ / :			
			<i> </i> :	<i>l l</i> :			
			<i> </i> :	<i>l l</i> :			
			<i> </i> :	<i>l l</i> :			
			<i> :</i>	<i>l l</i> :			
			<i> :</i>	<i>l l</i> :			
			<i> :</i>	/ / :			
			<i> :</i>	/ / :			

□ 유고 결석 사유: 해당되는 사유를 찾아서 '해당여부'란에 표기

해당 여부	유고결석 사유	증빙서류
	1.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4주 이내)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원
	2.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4주 이내)	진단서(입원,치료기간 명시)
	3.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관련 통지서
	4.교육실습, 야외실습	가조 체치 ㄸ느 데칭 차기
	5.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각종 행사 또는 대회 참가
	6.전국 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허가증 또는 이에 준한 문
	7.학생회 임원의 학교 공식행사 참가	서
	8.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수험표 또는 접수증
	9.체육부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대회 출전 허가 증빙문서
	10.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
	11.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2.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기타 증빙자료

본인은 상기와 같이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71조에 근거하여 유고결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 . .

신청인: (인)

확인자: 학(부)과 주임교수 (인)

붙임 : 유고결석 증빙 서류 각 1부. 끝.